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공무직근로자(장애인) 채용 재공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에서 방사능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공무직근로자(장애인)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1. 채용인원 : 1명 [사무실무원 나급 / 장애인]

채용직종 (등급)	모집 인원	수행업무	채용관련 학과	응시자격
사무 실무원 (나급) / 장애인	1명	○ 시험검사업무 보조 - 방사능 검사 보조 -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위생용품 등 검체관리 보조 -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위생용품 등 검사업무 보조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중 채용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2번 응시자격기준 참고

\*(한)의학, (한)약학, 수의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 농산(식품)제조학, (농)화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발효 공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공중보건학 등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 2. 응시자격기준

구 직종	분 등급	응시자격 기준	
사무 실무원	나급	필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합격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li> <li>○ 장애인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li> <li>○ 장애인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li> </ul>
			○ 위의 필수요건을 충족한 자 중 수행업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자

## 3. 채용전형 시기 및 방법

채용전형	진행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6. 4. 2.(목)	-	2026.4.13.(월) 개별통보 및 채용시스템 게시판 공지
면접시험	'26. 4. 15.(수)	시간 및 장소 별도 통지	
최종발표	'26. 4. 15.(수)	-	개별(유선, 문자)통보 및 채용시스템 게시판 공지

## 4.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 나. 이력서 1부(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서식1)
- 라. 장애인증명서 1부(필수)
- 마.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 바.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기타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사. 주민등록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 아. 가족관계증명서
- 자. 취업보호 지원대상자·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5. 응시원서의 접수방법 및 기간

가. 제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employ.mfds.go.kr>)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나. 접수기간 : 2026. 4. 2.(목) 09:00 ~ 2026. 4. 10.(금) 24:00

## 6. 보수 및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직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나. 근무(계약)기간 : 채용계약일 ~ 2026. 12. 31.

※ 특이사항이 없을 시 식약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재계약 가능하다.

다. 근무시간 : 공무원에 준함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근무장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대전 서구 청사로 166)

마. 보 수 : 식약처 「2026년도 공무직근로자 보수지급계획」에 따름

구 분	월 보수액 (세금 공제전)
사무실무원	2,156,880 원

바. 4대 보험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급식비 : 통상임금 외에 매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 지급

※ 신규채용, 퇴직, 휴·복직 등 재직상태 변동 시 일할계산

## 7. 우대조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차상위 계층 및 개별가구

다. 업무관련 학과(식품공학 등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2-480-3887)

